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> 201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(2014. 8. 7.)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"시민단체"를 "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)"로 명확히 규정(안 제12조) 나.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개정하고, 주소 기재방법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함(안 별지 제5호서식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장(참조 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자치행정과(전화: 901-6083, FAX: 901-6108, E-mail: seob125@gangbuk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
- 라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01071)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 강북구청 자치행정과